

의안 번호	1961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【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】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심사보고서</b></p>
----------	------	---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7. 11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7. 11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7. 29.(금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자치국장 김혜경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중구야구장 조성됨에 따라 체육시설 정의 및 명칭에 야구장을 추가하고 사용료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체육시설 정의에 야구장 추가(안 제2조)
-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 야구장 추가(별표 1)
- 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에 야구장 추가(별표 2 ~ 별표 3)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 및 제156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중구야구장 조성(2022. 4월)에 따라 체육시설 정의 및 명칭에 야구장을 추가하고 사용료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근거법규

### 지방자치법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